

사회복지 주간 동향 (20.7.13.~7.17.)

1.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담배와 거리 두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 및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
 - *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증가
 -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 위험증가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19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37.6%, 중환자실 입원자 중 78.3%가 기저질환 환자
 -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음
- ※ (유럽 생화학학회지) Olds, J.L., & Kabbani, N. (2020). Is nicotine exposure linked to cardiopulmonary vulnerability to COVID-19 in the general population?

-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가 악화될 위험이 14.3배 증가
 - (중국의학저널) Liu,W., Tao,Z.W., Wang,L., Yuan,M.L, Liu,K.,, Zhou,L.,&Ming,Y.(2020) Analysis of factors assoicated with disease outcomes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2019 novel coronavirus disease
 - *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로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금연상담전화, 모바일(휴대전화) 금연지원서비스, 니코틴보조제(껌, 패치 등)와 같이 검증된 방법을 통해 즉각 금연할 것을 권고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으로 흡연을 포함시킨 바 있음
 -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고령,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같은 코로나19 위험요인과 달리, 흡연은 금연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
 -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원 금연치료뿐 아니라 금연 상담전화 (1544-9030), 모바일 금연지원 앱(금연길라잡이)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되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함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2 중앙정부 복지현안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1단계 개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월평균 20.5시간 증대 등 실질적 효과]

[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

-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 *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추진
 -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 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

*** 1단계 추진실적 점검결과**

- 활동지원 급여시간 월평균 20.5시간 증가 : 중증장애인일수록 급여량 증가, 경증장애인도 수급자 인정
- 12개 중앙행정기관 23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강화 등 전달체계 계획대로 추진

*** 1단계 추진내용 보완 활성화**

- 최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권리구제 강화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적용 및 서비스 확충**

- 현행 보행상 장애 기준 유지, 보충적 수단으로 종합조사 도입
-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증차,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 내 이동지원 등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 되는 성과가 나타남

* 무엇보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 → 139.9) 증가,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

-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인정조사-종합조사 급여시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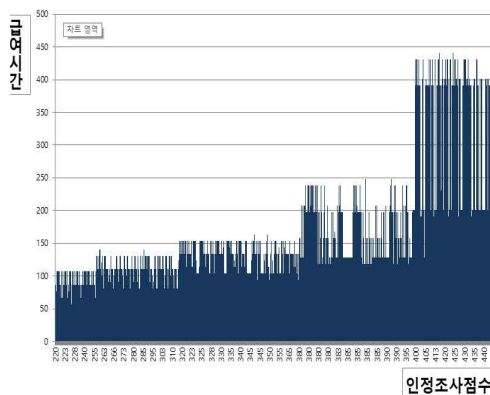
(단위 : 시간)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전체
대상자(명)		2,085	2,778	1,731	7,243	3,098	218	1,142	18,295
급여량 (시간)	종전	157.5	154.0	121.9	103.3	102.8	78.4	104.5	119.4
	변경	182.8	187.3	138.3	122.5	120.1	98.8	124.8	139.9
	증감	25.3	33.3	16.4	19.3	17.3	20.4	20.3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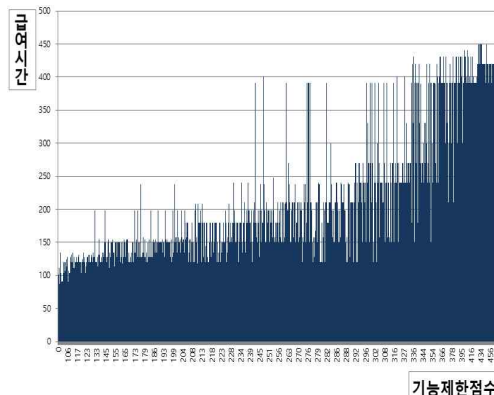
※ 출처 : 장애인 종합조사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운영현황 데이터 분석 기초연구('19)

* 활동지원 급여가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증가하였다면, 종합조사 도입 이후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급여 적정성도 개선

< 기존 급여량 분포도 >



< 종합조사 후 급여량 분포도 >



- * 그간 활동지원 신청도 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들도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춰 서비스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246명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가능
 - 이는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가 구현
- * 이 외에도 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 중·경증의 장애정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2개 중앙행정기관의 23개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대상 상당수가 확대
 - 예)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 확대 (1급 → 중증 장애인)
 -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1·2급 → 중증 장애인)
 -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상담·안내, 장애인 전문기관 동행상담 도입 등 장애인 맞춤형 상담 강화, 모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운영되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도 계획대로 추진
 - ※ 전년 대비 장애인 상담 건수 ('18년 245,754건 → '19년 284,765건, 15.9% 증가)
-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
 -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 방식을 개선할 계획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 급여 수준 보장, 3년 이후 다시 종합조사를 거쳐 이후 급여 수준이 결정되도록 이미 권리구제 방안 적용
 - 이에 더하여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
- *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하여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하여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
-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 특별교통수단 확충 /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

-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은 장애계와의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한 제도이고 장애등록과 동시에 보행상 장애여부가 판정되는 장점**
 - 이러한 장점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기준의 일부 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업무에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하여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 추가적인 보호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정도 추가 지원되는 수준에서 선정점수 적용,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강화 /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
- *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함**
 - 특히 2019년 7월에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특별교통수단 증차 유도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교통약자법령에서 정한 대수(중증의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이상을 시군구에서 운행하도록 함
 -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
-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서비스과/교통안전과)**

2.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

(%)

		연도별 동향(전년비)			최근 월별 동향(전년동월비)			
		2017	2018	2019	'20.3월	4월	5월	6월
○	소비자물가지수	1.9	1.5	0.4	1.0	0.1	-0.3	0.0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1.5	1.2	0.9	0.7	0.3	0.5	0.6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1.5	1.2	0.7	0.4	0.1	0.1	0.2
○	생활물가지수	2.5	1.6	0.2	1.8	0.3	-0.7	-0.3
○	신선식품지수	6.2	3.6	-5.1	3.8	2.9	3.4	4.3
품목 성질 별	농축수산물	5.5	3.7	-1.7	3.2	1.8	3.1	4.6
	공업제품	1.4	1.3	-0.2	1.3	-0.7	-2.0	-1.4
	전기·수도·가스	-1.4	-2.9	1.5	1.6	1.4	1.3	1.3
	서비스	2.0	1.6	0.9	0.5	0.2	0.1	0.1

※ 자료:통계청 보도자료(경제동향통계심의관 물가동향과)